

[긴급토론회]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정치



일 시 2018. 6. 15.(금) 오후 7시
장 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주 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순서

사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통계의 정치: 숫자로 보는 ‘몰카’ 수사 그리고 해화역 김민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발제 2	처벌의 정치: 사적 구제와 공적 처벌 추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발제 3	시선의 정치: 보는 자, 보여지는 자와 젠더 권력 김소라(송실대 강사)

휴식

토론 1	처벌법의 내재적 불평등 : 성폭력 범죄의 법익침해, 그 구성장다혜(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토론 2	디지털/사이버성폭력은 누구의 시선으로 ‘판단’되는가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토론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례 중심의 현장 분석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종합토론	다함께

목 차

발제 · 토론문

발제 1 통계의 정치: 숫자로 보는 ‘몰카’ 수사 그리고 해화역 1

발제 2 처벌의 정치: 사적 구제와 공적 처벌 11

발제 3 시선의 정치: 보는 자, 보여지는 자와 젠더 권력 28

토론 1 처벌법의 내재적 불평등 : 성폭력 범죄의 법익침해, 그 구성 48

토론 2 디지털/사이버성폭력은 누구의 시선으로 ‘판단’되는가 56

토론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례 중심의 현장 분석 65

< 발제 1 >

통계의 정치: 숫자로 보는 ‘몰카’ 수사 그리고 혜화역

김민정(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몰카’ 천국, ‘몰카’ 범죄의 성별화

2000년대 초 모텔에 처음 가봤다. 천정은 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방의 벽과 TV, 옷걸이, 컴퓨터 등이 모두 침대를 향해 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느껴졌고, ‘몰카’를 찾겠다고 부산스럽게 방안을 돌아다녔다. 남친은 개의치 않았다. 부러웠다. 그 때도, 그 이전에도 ‘몰카’가 있었다. 이후 ‘몰카’는 더욱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찍히는 장소, 찍힐만한 행위와 부위가 점점 다양해지더니, 어느 순간 그냥 여성들의 모든 일상이 몰카의 대상이 되었다. 화장실에는 이상하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선 가방과 손바닥으로 다리를 가려야만 했다. 바깥세상인 ‘길거리’ 그 자체, 공공건물, 내 집안까지 모두 포르노적 장소가 되었다.

‘몰카’는 한국에서 생산·소비되는 야동의 주요 장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몰카’의 범죄성은 2018년, 그녀들이 남성을 찍고 이를 공유하고 웃고 조롱한 순간에 와서야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지되었다. 이제야 ‘몰카’에 피해자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찍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고 웃고 즐기는 것 또한 ‘2차 가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몰카는 공권력의 묵인 하에, 일반 남성들의 동조 아래, 쾌락의 산업이자 문화였다.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를 원죄로 규정하여 여성의 인간성을 지우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단속

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현행법상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미러링이 형법상 범죄 행위임은 분명했다. 그러나 범죄행위임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이 그간 여성들이 체감하여 익히 알고 있던 모습과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아닌 정의로운 목격자들에 의해 사건의 공론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가해자를 색출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자 신속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 수사 몇새 후, 가해자는 긴급 체포되었고 그 다음날 포토라인에 서서 모습을 드러냈다.

- | |
|---|
| 2018. 5. 1.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워마드 공개
홍익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건 공론화, 범인 처벌 촉구 |
| 2018. 5. 2. 홍익대, 가해 학생 추적 |
| 2018. 5. 4.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건 언론 보도 |
| 2018. 5. 5. 학교, 수사 의뢰, 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 내사 착수 |
| 2018. 5. 7. 홍대 男 누드모델 몰카 유출 수사 착수 |
| 2018. 5. 11. 경찰, ‘홍대 몰카’ 피의자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청 |
| 2018. 5. 12. ‘홍대 몰카범’ 포토라인에서 모습 공개 |
| 2018. 5. 19. 1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
| 2018. 6. 9.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

2. 그들은 자꾸 여성들이 틀렸다고 한다.

산업이자 문화이자 제도였던 ‘몰카’의 천국에서 한 남성이 ‘일부’ 여성들의 (비성적)쾌락 생산에 도구화되었다. 이제야 몰카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지 강조되면서, 그러므로 더더욱 가해자 처벌이 신속하고 엄정해야 된다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범죄 발생 후 가해자 검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던, 불법촬영 범죄를 대하는 모범답안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슬픈지.

소라넷을 파헤치는 것도, 여성혐오의 만연함을 알리는 것도, 강남역 살인사건이 단순히 가해자의 정신질환 때문이 아님을 밝히는 것도 모두 외로운 싸움이었다. 부당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그들은 전문가와 공권력의 권위로 여성

들의 발화를 억압한다. 여성들의 발화 내용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하기 전에 그녀들의 피해의식을 지적하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먼저 진단 내린다. 진단의 근거는 기술, 과학, 지식, 통계이다.

근대사회 성별이분법의 남성을 대표하는 이성과 합리를 무기로 꺼내며, 여성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경험적 지식을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려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그들은 범죄전문가의 ‘문지마범죄’ 진단을 무기로 삼았었다. 정신 질환자는 혐오라는 정서를 느낄 수 없으므로 여성혐오를 할 수 없지만, 범죄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선택’하는 합리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포탈 사이트이자 현재의 ‘몰카 천국’ 건설의 일등공신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간 법률의 차이와 기술의 문제를 들었다. 그런 이유로 17년간 건재했던 소라넷은 2015년 12월 소라넷 전담수사 태스크포스 창설 후 6개월만에 기술과 국제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2018. 5. 14.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도 20여명으로 특정된 상황이었다”면서 “성별에 따라 수사속도를 늦추거나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소라넷 수사 요구, ‘○○패치’ 폐쇄, 강남역 사건 때의 경찰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발화 위치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이, 여성들의 문제 제기를 억압하는 모습이었다. 불법촬영 범죄의 젠더화된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항하는 경찰의 무기는 통계였다. “불법촬영범죄의 검거율이 94.6%, 음란물 유포범죄 검거율도 85.4%로 높은 편이고, 이들 범죄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지나친 억측이다.”

아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나친 억측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촬영’, ‘검거’를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하여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보았다. 검거된 불법촬영 관련 범죄의 내용과 불/구속 수사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소라넷 수사를 마친 경찰은 소라넷에 성기구 판매업소를 광고한

업주 3명과 소라넷 카페 운영자·회원 8명을 청소년 유해매체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소라넷에 게시된 도박사이트 광고에 접속, 도박을 한 회원 51명도 도박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2018년 3월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모(37)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 신모(40)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음란·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과 성매매 후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남성 회원들을 모집해 1만40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음란·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인 신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배너 광고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음란물 160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이트 활성화 위해 음란물과 성매매 후기를 올리는 회원들에게 포인트(성매매 예약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가 자동 적립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특히 매달 '후기왕 이벤트(성매매 후기 콘테스트)'를 열어 자극적인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회원들에게는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 회원들의 경쟁적 성매매와 후기 작성을 유도했다. 작성된 성매매 후기는 남성 회원 모집과 성매매 광고로 활용되기도 했다. (뉴시스 2018.03.01.)

구속된 박모씨(36)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 객실에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50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된 이모씨(34)는 손가방형 카메라를 이용해 지난 3~9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60여차례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모씨(36)와 김모씨(38)는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성행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4명은 도합 147회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하는 동안 한차례도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들킨 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뉴스1, 2017.10.1.).

3. ‘몰카’ 통계의 함정

현재 ‘몰카’의 생산 혹은 공유는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다. 성폭력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통상 강력범죄(살인, 폭력, 강도, 성폭력)로 분류되지만, 피해자-가해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력 등 지극히 전통적인 성폭력 통념에 따라 법률상 형량이 차등적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판결의 태도 역시 차등적이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와 범죄 행위자 간 접촉이 없는, 그래서 피해자가 저항할 기회조차 없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의 태도는 범죄의 인지, 수사의 시작, 수사 지속, 기소, 유죄판결, 형량의 결정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일련의 과정의 핵심 마디마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범죄발생률, 수사기관 접촉률, 검거율, 기소율, 유죄판결율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각각의 범죄관련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많은 학술논문이, 미디어가, 형사사법기관이 이 지표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사용하여 범죄 발생 현황을 말하고, 이 지표를 피해발생률과 동어로 취급한다. 학술논문이나 기사, 정책자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클리셰는 틀리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기소가 증가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성범죄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성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들의 인지와 적극적 저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특정시기 해당 범죄 처벌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라는 이름으로 적시되는 숫자의 힘은 강하다. 통계는 사실이고 과학이고 가치중립적이어 보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통계는 정치적이다. 영국의 통계학자 발터 크래머는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통계를 들먹이는 것”이라 하였다. 영국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는 세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숫자에는 본질이 없으며, 사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적 ‘사실’은 국가와 행위자들이 ‘창조하는 것이다. 숫자

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숫자를 자신을 둘러싼 테두리 내에서 숫자를 해석하고 이용할 뿐이다. 숫자를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이해하려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인간 행위와 사회적 환경의 맥락을 보다 세심히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혜화역에서의 여성들의 외침에 대하여, 불법촬영의 가해자-피해자의 행위와 사회적 환경의 맥락,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없이, 숫자를 편향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먼저 서울 지방경찰청장의 인터뷰와 유명 남성 논객의 트위터에서 발췌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모두 통계의 검거율을 논거로 불법촬영 수사가 여성에게 편파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의 검거율이 94.6%, 음란물 유포범죄 검거율도 85.4%로 높은 편이고, 이들 범죄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지나친 억측이다.(서울지방경찰청장)

홍대 모델 몰카 가해자를 잡는 동안 여성 대상 몰카는 왜 방치하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몰카(카메라 이용촬영)를 이용한 범죄 검거율은 94.6%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남성 논객 트위터 내용 중 발췌)

잘못된 숫자를 들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다. 검거율 그 자체와 “여성 대상 몰카 방치” 여부는 별 상관이 없다. 검거율은 신고가 접수된 혹은 경찰에 의해 인지된 불법촬영 범죄들 중, 경찰이 사건을 실제로 진행시켰으며, 그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를 말한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 여부 자체가 선별적이라면, 검거율은 이미 오염된 통계일 뿐이다. 혹은 수많은 불법촬영 범죄들 중 범인을 특정하기 쉬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한 경우 검거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범죄에 비해 검거하기가 월등히 수월한데, 왜 불법촬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지에 대해 또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경찰은 검거를 잘 하는데, 검찰과 법원단계에서 쉽게 풀려나는 것인지 말이다. 검거율을 통해 여

성 대상 몰카를 방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전체 피해발생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살펴야 한다.

구속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기동팀이 구속률을 이용하여 몰카 범죄 수사가 여성 가해자보다 남성가해자가 오히려 더 엄한 잣대로 적용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남자 구속률이 여성보다 3배 높아: 경찰청 ‘불법촬영(몰카)’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된 남성 몰카 피의자 2만924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538명. 구속비율은 전체 남성 피의자의 2.6%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 피의자는 총 523명으로 이 중 4명만 구속됐다. 전체 여성 피의자의 0.8% 수준이다. 남성 피의자 구속률이 여성 피의자보다 약 3배 높은 것이다(조선일보, 2018.05.15.).

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삭제하고 성별만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이라서 구속이 덜 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유도한다. 구속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법정 구속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수사 단계에서 두가지 형태의 구속이 있는데, 피의자 구속은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피고인 구속은 검찰단계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범죄 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와 큰 상관없이 형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속률이 남성이 더 높다는 말은 남성 불법촬영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혹은 범죄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의 성별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구속률을 비교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몰카 피의자 2만924명 대 523명이라는 성비차가 이미 해화역에서의 여성들의 외침을 더 잘 뒷받침해준다는 것이다. 일련의 형사사법 단계에서 실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유/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거치게 되는 각 단계 모두 범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판결 단

계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범죄발생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누락되는 변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가해자로서 정체화하여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속률 혹은 그 외의 범죄관련 통계지표의 단순 성차 비교는 그러므로 대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피해자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지표는 가해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강남역에서부터 미투 운동을 거쳐 혜화역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은 계속 한 가지를 이야기 해왔다. 국민으로서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고, 잠재적 범죄 피해에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로서 정체화하고 있는 여성들의 '동일범죄, 동일처벌' 발화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단 하나, 피해조사이다.

실제 범죄 발생

(실제 범죄 발생률=실제 피해 발생률, 수치화 불가능)

→피해자·목격자의 사건 인지

(피해자·피해 조사, *누락: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함, 범죄로 의미화하기 거부)

→경찰의 사건 인지

(경찰접촉률, *누락: 신고하지 않음(암수범죄), 다른 방식으로 해결(진정, 개인 간 해결 등))

→경찰수사

(신고율, *누락: 내사종결, 사건접수 거부, 피해자가 사건 진행 포기)

→(검거)→(구속)

(범죄발생지표로 사용하지 않음)

→기소→(구속)

(기소율, *누락: 기소유예, 범죄 성립 증명 어려움, 피의자 검거 못함 등)

→유죄판결

(유죄판결율, *누락: 선고유예, 무죄판결)

→구금

(구금률, *누락: 벌금형, 집행유예 등)

공식 통계로는 여성들의 불법촬영 피해를 가늠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접촉률이 그나마 가장 좋은 지표가 될 테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통계로 생산하지 않는다. 보통 불법촬영 피해의 경우 고소가 아닌 진정의 형태로 진행되고, 수사의 어려움, 낮은 실적 점수 등으로 인해 경찰수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피해 조사는 지역, 학력, 연령,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전체 인구에 대해 추정하여 통계 결과를 생산한다. 그러나 불법촬영은 그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국노’를 취급하는 모든 웹하드, P2P, 웹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국노’, ‘군노’ 영상의 수를 세는 것이다. 같은 영상이 여러개라 할 지라도 이는 피해의 횟수를 말해주므로 피해조사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몰카’가 이미 거대한 산업이 되었던 말이며,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사실이었단 뜻이고, ‘남성’의 범죄 혹은 젠더화된 범죄 유형에 그동안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4. 나가며

편향이 적은 방식으로 그나마 불법촬영 가해자에 수사 및 처벌 경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통계 수치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9%(564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 2017년 6,47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증가 수치는 형사사법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경찰청에 제공하는 ‘범죄통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배포 등 ‘몰카’와 관련된 모든 범죄는 ‘성폭속범죄’ 항목에 속해 있으며, 도박과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촬영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의 몸이 사회의 ‘성폭속’으로 귀속될 정도

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단단히 구조화되어 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부당함과 그러한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이것이 사회 문제임을 증명하는 일은 오랜 기간과 지남한 노력을 요한다. 지식과 권위는 끊임없이 맨스플레인한다. 이성의 도구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우리의 경험을 억압하려 한다. “울지마 지워 줄게, 죽지마 지켜 줄게, 우리가 싸워 줄게.” 혜화역의 한 플래카드 메시지이다. 여성의 피해를 즐기고, 피해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남성동성사회에서 그녀들의 연대의 목소리가 애달프고 굳건하다.

< 발제 2 >

처벌의 정치: 사적 구제와 공적 처벌

추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몰카범죄 처벌 강화’와 ‘성별에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청장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천명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경찰은 뒤이어 여성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남성도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는 몰카 피의자의 95%가 남성이라는 점을 들며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을 두고 ‘편파수사’라 일반화 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영장 청구가 권위주의 시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들끓었을 때, 국가 형벌권의 확장이나 피고인, 피의자 등의 생명, 신체,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했던 일각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물론 형사절차상에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위법한 강제 수사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기본권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 간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의 무엇인가? 그 기준은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평등했는가? 추상적인 인권 개념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이미 법 앞에 평등한 주체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의자, 피고인 등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자의 목소리는, 보다 정확히 여성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누락되어 왔고 법 앞에서 피해를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다른 한편 이와 달리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법 감정’을 반영하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던 이들은 조두순과 같은 ‘괴물’을 선별하는데 집중했

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강력한 피해자 보호의 외양을 한 이와 같은 목소리들은 정작 학교, 직장, 온라인, 연인, 가족 등 일상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젠더 불평등의 산물로서의 폭력에 대한 이해 확장으로 연동되지 못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가 달려온 처벌 제도의 변화 과정이 이러하니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언제든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강화되는 한편 온라인을 매개로 일상화 된 여성혐오는 남성들의 놀이, 문화, 혹은 실수로 용인되면서 처벌 제도 변화의 외부에 놓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몰카’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라는 진단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하에서는 2017년 실시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왜 이와 같은 진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향후 젠더 정치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동일 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사적 구제: 불온한 여성들

가. ‘불법촬영’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 혐오

‘불법촬영’은 흔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존하는 여성의 촬영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의 범위는 더욱 넓다. 위 법 2항에서는 그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같은 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¹⁾,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²⁾는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등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이미지가 ‘음란’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제작,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마찬가지로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여 음란성과 무관하게 특정한 촬영물을 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한다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의 명명을 통해 가시화되어 왔다. 예컨대 연인 관계에서 촬영되었거나 채팅을 통해 주고 받은 알몸 사진을 공연히 전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여성에게 전송하면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채팅방에서 공유하며 성희롱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행위들은 더욱 많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성폭력, ‘눈으로 한 강간’으로서 기존의 법 체계가 전형으로 삼아 온 강간, 간음, 추행 등 성기 삽입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의 유형들과 구분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다. 후자의 성폭력 상황을 촬영하여 온라인에서 공유, 소비하는 것은 물론, 전자의 이미지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으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촬영된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진의 합성 또는 이미지와 함께 계열화 된 제목이나 댓글 등을 통해 여성혐오의 표현물이 탄생하기도 한다. 2017년, 페미사이드로 이어진 악성삽 홍보 동영상과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말이다.

‘불법촬영’에 대한 외침은 이와 같이 여성의 몸 이미지에 대한 혐오적인 생산과 유통의 문제에 대하여 법이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개전투를 하며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이 아닌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11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장면을 성적 문화로 즐기고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인터넷 게시판들을 보면서 분노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그 누

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글을 올리면 이것이 남초 사이트로 옮겨져 ‘피해자들이 꽃뱀이라 그런다’,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한국여자들이 이럴 수 밖에 없는 문화를 만든 것이다’는 등의 여성혐오가 쏟아지거나, ‘전쟁이 나면 여자를 강간해버리고 갈거야’와 같은 글들이 부착된다. 성폭력 피해를 반복하여 경험한 사례11은 그와 같은 표현물들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 상황 역시 촬영되어 그 영상이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통되고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때문에 음란 사이트의 게시물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보며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그런 걸 쓰면 안되고 왜냐하면 그걸 봐서 너네들은 아무렇지 않고 다른 여자들은 뭐, 아씨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나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에게서는 폭력적이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핑~장히 심리적으로 너무 분노감을 항상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그런데 그랬을 때 재네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사례11, 2:38-3:27)

여성의 몸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방적인 성적 소비와 지배의 대상이 되고, 피해 여성은 확산력이 큰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여성을 성기 삽입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여성혐오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등장한 ‘편파수사’에 대한 비난은 비단 한 사건 혹은 ‘몰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성의 이미지를 성차별적으로 재현, 유포, 가공하는 행위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댓글을 통해 비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 활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불평등한 젠더 관계 속에서 체화된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사례10은 여성의 사진을 임의로 퍼가 혐오적인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집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오프라인 상에서 ‘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례11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었고, 남성권력이 암시한 그것,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후 한두달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다. 신고를 한 경찰서에서도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별도의 공간을 요청하여 조사를 받을 정도였다.

“...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카톡이 떡 온 거예요. “누나, 누나 그 사람 맞죠.” 경찰에 와서 나보고 가서, 가면서 나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떡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바들바들 떨면서... 사실은 내가 그 때 경찰한테 요구했었어요. 따로 진술을 해서 조사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경찰이 그래서 나도 ‘아, 나도 너무 그냥 그것도 그렇다. 뭐,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했는데, 예. 온거죠. 그래서 와서 듣고, 가면서 카톡을...(웃음) 그니까, 너무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래서 경찰이 따로 사건조사실 델고 가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맨날 카톡 몇수십개씩 오고, 보이스트톡 오고, 날 무슨 단톡방에 갑자기 막 초대해가지고, 마아아아악~ 성적인 글부터 해서 욕을, 욕을, 욕을 수십명이 막 내던지는 거예요.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사례11, 22:1-11)

사례12는 여성혐오를 생산하는 남성들에 대한 저항과 대항활동은 온라인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행위자들에 대한 남성들의 공격은 신체적 공격을 암시하고 협박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중요한 차이로 지적했다. 자신들의 대항 활동을 이유로 오프라인 상에서도 위협, 폭력 등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은 상당했기에, 면접대상자의 리쿠르팅 과정에서도 이들 대다수는 자신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우려했고 때문에 면접 당일까지 이름과 소속,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두려움은 저항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했다. 사

례21은 온라인상에서의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가 얼굴과 이름, 글이 '박제'되어 남초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극심한 댓글과 신상정보 공개의 협박을 받았다. 그녀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고 결국 자신이 하던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는 성차별과 관련된 기사에 '찬성', '반대'의 아이콘을 누르거나 지인들과 카톡을 하는 정도로만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사례10이 '온라인 테러'를 당한 직후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 나는 이런거 이제 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이었다. 사례11의 경우, 그 가족들까지도 폭력 피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 남동생이 누나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다며 무서움을 호소했고, 엄마는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했다.

즉 여성들은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여성혐오 표현물들에 자력구제로 대응해왔지만 그들의 안전은 그만큼 위협받기도 했다. 흔히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항 발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혐오를 생산하는 자와 대항하는 이들의 오프라인 상의 위치는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경계 역시 그리 단절적이지도 않다. 더구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벤지 포르노'나 '단톡방 성희롱'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촬영된 몸 이미지가 그와 같이 소비될 위험은 도처에 있다. 이를 보고 소비하는 남성/들이 아니라 응시되고 소비되는 여성의 몸을 음란한 것으로 비난하는, 성적 이중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또한 법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분노하지만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초래할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편파수사를 비난하며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전펜스에 둘러져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생물학적 여성만 집회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불법촬영, 편파수사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권리와 평등한 안전이었다.

나. 사적 구제를 제한하는 통신사업자의 편향된 제재 조치

누군가는 남성 '몰카' 피해자도 있음을 들며 최근의 집회가 '적대적'이라 비난

하지만 그 촬영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과 활용되는 방식은 몸의 성별에 따라 엄연히 다른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성의 몸 역시 그 자체로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음란’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즉 촬영된 혹은 재현된 이미지가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고 노골적이게 드러낸 것인지는 ‘음란’은 물론 ‘성적 수치심’³⁾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건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관계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재현해 내는지, 여기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로서 젠더이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여성의 몸은 ‘성적 흥분’,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구성해 내는 방식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여성을 성적 존재로만 환원하여 동등한 주체임을 부정하는 여성혐오는 바로 그 여성의 몸을 음란한 것, 불온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의 몸이 개인의 것임을 보여주하고자 한 상의 탈의 퍼포먼스와 그 촬영물이 경찰의 제재나 페이스북의 삭제 대상이 쉽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그것을 소비하는 남성의 시선은 자연화 되어 있는 것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불평등한 젠더 관계이다.

이러한 모순되고 이중적인 섹슈얼리티 규범은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삼아 유희를 즐기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제재로 이어진다. 많은 인터뷰이들은 여성혐오를 재생산하는 게시물을 통신사업자에게 신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영상이나 사진은 제대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

3)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큼 넘쳐나는 여성혐오를 목도해야만 한다. 특히 페이스북이 남성들의 신고에는 즉응하는 반면, 여성들이 신고한 영상물들은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터뷰이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사례20 역시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이 여성 혐오 게시물과 이를 비판하는 여성들의 게시물을 다르게 다룬다고 주장했다. 다음 카페나 페이스북의 경우,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계정은 신고가 이뤄지면 곧장 차단 하지만 유머저장소와 같은 여성혐오 페이지들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남초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연예인 합성사진이나 음란물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애초에 음란물 유포 관련된 부분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신고가 들어가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로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문젠데, 그 여성의 신체라던지, 그런 것들이 올라와있고 그 여성의 신상정보도 이렇게 올라와있고, 뭐 그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신고를 해도 안 지워지는 부분은...”(사례12, 18:33-38)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온라인상 여성혐오 표현은 지나치게 일상적인 것이 되어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혐오의 극단화 된 표현이 ‘드립’ 혹은 인터넷 유머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성차별의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소화 하는 이유, 그 결과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가 차별적으로 처리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지속된다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공정한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의 형사법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예컨대 표현의 사회적 효과나 맥락보다는 행위자의 고의와 인식을 중요하게 심사하는 형사절차에서 남성들의 혐오표현은 별 다른 의도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쉽고, 때문에 혐오표현을 불법화 할 때 주된 구성요건이 될 것으로 고려되는 차별이나 폭력의 ‘선동’이라는 요건으로 인정되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들은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물에 대하여 자구책을 동

원하지만 통신사업자의 차별적 제재조치로 인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토로했다. 또한 여성들의 몸은 위와 같이 그 자체로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또한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온한’ 여성이 된다. 사례10은 여성주의 모임을 위한 웹 페이지가 삭제된 경험을 이야기 했다. 아무런 욕설도, 미러링도 하지 않고 성차별에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들과 파티 형식의 이벤트 모임을 개최하기 위해 만들었던 페이지, 참석 여부를 누를 수 있게 해둔 이벤트 페이지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삭제가 된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 코리아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 접촉 경로조차 알 수가 없었다. 사례9와 사례10은 위 페이지가 삭제된 이유가 아마도 ‘페미’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 역시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지가 여러번 삭제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늘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으로 인해 여성혐오 표현물들은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반해, 여성들의 대항 활동은 손쉽게 제재의 대상이 되면서 대항발화의 공간이 위축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몰카’에 대해 ‘편파수사’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들의 사적 구제 활동은 또한 이들의 저항을 불온한 것, 나아가 남성 권력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이들에 의한 사적 응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즉,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물들에 대한 대항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이들의 발화 공간이 차단되거나 그들의 발화 내용에 삭제가 편중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들, 신상공개와 협박, 폭행의 위협 등 역시 포함된다. 발화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위협을 가하고 추방시키는 방법은 여성들을 다시 배제하고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제약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된다. 사례11의 경우 출신 학교와 졸업 연도, 페이스북에 연결된 친구들의 사진까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모두 공개가 되었다. 당시 사례11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자 찾아 갔지만 경찰로부터 별다른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사례12는 사례11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에서 여성혐오에 반박하는 글이나 발언을 한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 공유하면서 모욕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이 게시물을 지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워진다고 들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 ‘인터넷 장의사’와 같이 사비를 부담해 삭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끊임없이 찾아서 삭제요청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⁴⁾.

3. 공적 처벌: 강간 중심의 협애한 성폭력 이해

가. 사건 접수의 해태

여성들은 온라인 상의 사진, 재현물, 텍스트까지 여성혐오로부터 스스로를 구제 하도록 내던져져 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이에 대한 규제를 ‘검열’로 간주하고 반대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여성혐오에 대한 대항 활동 역시 바로 그 자유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권리도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방식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 하필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만 구성하고 소비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데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논거가 동원되는 상황은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를 묻게 만든다. 물론 규제의 방법 역시 처벌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와 같은 표현물 중에는 사적 자치,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거되지 않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이미지의 유포가 엄청난 확산력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나아가 이것이 또 다른 위해로 이어질 개연성을 고려하면 온라인 상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방식의 이미지 유포에 대하여는 강제적 제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의 대항의 목소리, 통신사업자의 규제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현실에서 형사처벌이라는 제재 수단은 더욱 적실성이 요구된다. 인터뷰이들의 대다수는 위와 같이 1차적으로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에 이르렀다. 그리고

4) 올해 3월,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인터뷰이들은 피곤함과 무력감을 호소했다. 형사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경찰은 신고 사실이 많다. 매체가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누가 가해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고소사실을 정리해 와라,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 근거자료를 가져와라 등등의 사유들을 들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은 진짜, 자기,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저희가 이제 ○○에서 할 때 다 피해자를 모아가지고 고소를 기각한 이유를 다 해봤거든요. 만 들어내는대로 그냥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고소장이 많다. 뭐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신상파악을 할 수 없다. 페이스북은 외국 사이트라. 그럼 피해자들이 페이스북 신상을 다 지가 파악해서 가지고 가요. 이름, 프로필사진, 핸드폰번호, 직장, 주소 다 가지고 가면,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그건 경찰이 해야할 일인 거잖아요. 아니면 고소 파일을 정리를 해서 와라. 아니면 뭐, 다 같이 집단고소를 인제 안 받아주니까 집단 고소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다 써와라. 아니면 니가 신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신상이 된 경로를 증명을 해와라. 아니면은 뭐 불러다가 무슨 말도 안 되, 무슨, 무슨 사유, 뭐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쓰라고 한 대요. 알고 보면 그게 고소 취하한다는 내용인, 그 문서를 억지로 모르는 상태에서 쓰게 시키고.”(사례12, 14:38-15:12)

사례12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지만 며칠 후 경찰관은 일부 게시물이 삭제되었으면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출석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이야기 했다. 당시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호사는 수사 담당자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참을 것을 권했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는 행태에서의 젠더 편향으로도 지적되었다. 경찰이 해외사이트라 검거가 힘들다며 15년간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해오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야 소라넷 사이트가 폐쇄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여성혐오 미러링 사이트의 운영진들을 찾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경찰들의 행태가 비교되기도 했다.

일베는 그런 거는 가만히 있잖아요. 일베는 그런 것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마찬가지로 유머저장소라는 페이지도 그 페이지 관리자는 광고도 많이 하고 자기가 동영상도 올리고, 팔로워들한테 주소도 알려주고 선물도 받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잡을 건덕지가 많잖아요, 잡을 수는 있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그런데 경찰이 전혀 잡으려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 이름 안가리고 얼굴 안가리고 올리고, 댓글에 악플 몇 백개씩 조작을 해도 그 사람들은 너무 여전히 건재하게 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심해요. (사례21, 9:27-34)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 상의 게시물과 아이디, 닉네임을 갖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 당하는 상황을 이야기 했다. 한 하급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촬영물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이디, 닉네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한,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수사기관이 아니거는 그 작성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닉네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고소여부의 결정 등 고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범인을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이디, 닉네임의 식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판시했다(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 7220). 이는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직무범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수사를 해태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인을 안 날’은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중

요한 쟁점이다. ‘불법촬영물’을 통한 후속 행위들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율될 수 없어 모욕으로 그 불법성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기간의 도과는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SNS에 이미 자신이 공개한 몸 사진을 편집하여 법이 이야기 하는 ‘음란’에 이르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혐오를 전시하는 행위는 통상 모욕으로 의율 된다. 그리고 현행 형법 312조에서는 피고인의 고소가 있어야 모욕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0조에서는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던 촬영물을 뒤 늦게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위 판례에서는 온라인에서 피고인의 닉네임, 아이디까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닉네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즉 피해사실을 안 시점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⁵⁾. 하지만 이와 같이 ‘범인을 안 날’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⁶⁾.

나. ‘경미’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밖에 온라인 상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간 형사사법기관이 구체적 처리 지침이나 판단 기준을 마련해오지

5) 대법원은 ‘범인을 알게 된다’라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은 성명, 주소, 연령 등 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6) 게시물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되어 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를 피해자와 경찰이 함께 확인하였던 사례(수원안산 2015고단1499)에서는 이를 확인한 시점에 범인을 안 것으로 인정한 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본건 모욕 이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서로 댓글을 주고 받았던 사실, 상대방의 대화명 또는 아이디를 알았던 점을 이유로 모욕의 댓글을 확인한 시점을 ‘범인을 안 날’로 판단하여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서울중앙 2015고정2850).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피해들은 ‘경미사건’으로 치부되어 왔고, 양형 기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성범죄’ 양형 기준은 강간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행위 태양에 국한되어 있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선고된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되는 것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2016. 3. 31 2015헌마688). 이와 같은 피해들이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률적인 신상정보 등록의 문제는 차치하고 여기에는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에 비하여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불법성이 경미하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위 법이 개정되었다. 이것들이 간음이나 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이나 범행의 경중은 행위태양만으로 설명되기 힘들다.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후행위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간을 성폭력의 전형으로 두고 이를 중심으로 법정형과 제재 수단을 서열화 하고 있는 법 체계와 법 해석의 관점은 결국 남성의 경험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오래된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극단의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고 여성의 피해를 부정하는 것, 여성의 성적 순결을 보호의 우선적 가치로 삼는 관점은 그것을 저지르기 쉬운,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한 남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여타의 성폭력에서도 그 경중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작동한다. ‘통상의 강제추행’, ‘가벼운 범죄’와 같은 형태의 기준이다. 여성의 물질적인 몸 그 자체에 대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촬영과 같이 재현된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남성의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불필요한 성폭력에 있어서는 더욱 ‘경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크다. 예컨대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의 가슴 크기, 자위행위, 초등학교 등의 정보를 빌미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채팅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몸 사진 및 성기 사진 14장을 촬영하도록 만든 사건(정읍2013고합25)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양형 인자를 채택하였다.

4. 평등한 처벌의 의미

남성과 여성이 형사절차에서 상이하게 취급되는지 여부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전통적인 질문 중 하나이다. 여성은 범죄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젠더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욱 처벌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그 젠더규범은 여성을 가정 안으로 위치 짓고자 부양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에는 더욱 낮은 처벌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은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사회적 존재라는 관점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계급적 지위, 섹슈얼리티, 인종에 따라 처벌의 효과는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젠더와 교차할 때 그들의 여성됨의 의미 역시 상이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입건, 수사, 양형, 가석방, 교정시설에서의 처우 등 절차의 단계마다, 범죄의 종류나 범행 동기, 도구, 공범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더욱 가혹하게 처벌받는지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평등한 것인지 여부이다. 한 범죄학자는 성폭력으로 처벌받는 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인데 왜 처벌이 불평등한 것이냐고 묻는다. 어떤 법학자는 성충동약물치료가 왜 남성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지, 젠더 평등한 시대에 여성들에게도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성폭력 가해자의 성비가 같아지는 것이 젠더 평등한 사회의 척도인 것처럼. 누구나 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사회가 평등한 것인가?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동등한 폭력 행사의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왜, 그리고 덜/더 처벌하는지, 이 사회가 누구를

어떠한 이유로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젠더의 관점에서 평등할 것에 대한 요구이다.

설사 ‘동일범죄’라 하더라도 그것에 이른 경위나 맥락에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동일처벌’은 정의(justice)가 될 수 없다. 예컨대 법정에 선 피고인이 모두 남성이라 하더라도 하필 남편, 남자친구로서 아내와 여자친구에게 행한 폭력을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 용인하며 정상을 참작하고 더욱 관대한 처벌하는 것은 젠더 평등한 처벌이라 보기 힘들다. 상대방, 피해 여성이 성매매나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유일한 선택지로서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른 여성의 살해 행위와 그녀의 결별 요구에 분노하며 아내를 살해한 남성의 행위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젠더 평등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성의 안전, 나아가 젠더 폭력의 처벌에 있어 이와 같은 수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동일범죄, 동일처벌’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위법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남성의 그것에 눈감는 법집행 행위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 사회의 젠더 규범, 성애화 된 여성의 몸을 소비하는 것을 남성간 연대의 도구로 삼거나 놀이로 사소화 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남성보다 대상화 된 여성을 음란하고 불온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리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려거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는 성적 이중 규범에 대한 비판이다. 여성의 몸을 특정한 맥락에서 재현하고 유통, 소비하는 남성중심적 시각과 이것을 남성의 본래적인 행위로 묵인, 방조하는 젠더 규범이 그것을 음란하게, 또한 피해로 구성해낸다.

그간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온라인 상의 성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과 그것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집행은 당연히 필요하다. 촬영의 대상자와 이를 생산, 유포, 소비하는 자의 상이한 사회적 위치와 맥락, 그 파급 효과, 수단 등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채 특정한 죄명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경미사건’으로 치부되는 문제는 극복되어야 한다. 다만 여성에 대한 그와 같은 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법과 법 집행 권력만이 강화된다면 여성의 몸은 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남성이 아닌 국가에 의해 다

시 통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성의 상의 탈의 시위를 두고 공연음란죄 의율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법 체계이다. 지금 여성들은 몸의 노출 정도, '적나라한' 재현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그것을 성애화 된 코드로만 재생산하는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자명하고 당연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법의 보호를 요청하지만 바로 그 법의 남성중심성 역시 비판하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과 '처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젠더 평등한 안전에 대한 요구, 언제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되 '음란'하지만도 않은 나의 섹슈얼리티와 몸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성들은 관용을 베풀기 충분한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동등한 대항의 주체, 정치적 행위자로 나섰다. 지금, 우리는 잠재적/피해자로서 처벌과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은 관점, 즉 보호라는 명분하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을 동등한 주체가 아닌 피해자로서'만' 위치 지으려는 온정의 관점에도 균열을 가하고 있다. 이들을 불온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백래쉬는 늘 존재해 왔다. 여성들은 두렵지만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으며 바로 그 두려움은 지금 강력한 정치적 연대의 근간이 되고 있다.

< 발제 3 >

정치 : 보는 자, 보여지는 자와 젠더권력⁷⁾

(송실대 강사)

1.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불법촬영과 일상의 공포

최근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몸, 일상, 성행위 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이 긴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인터넷 네트워크 및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중화로 인해 이미지와 영상의 촬영, 복제, 유포, 변형이 손쉬워진 가운데, 동의 없는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통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개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자, 여성 일반이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몸이 찍히고, 유통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상에서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범죄다. 즉 사생활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별적 침해이자 여성 집단 전체를 섹슈얼리티에 대한 침해와 공격에 취약한 이들로 고착시키는 효과를 갖는 젠더폭력인 것이다. 특히 다수의 가해자들은 익명성 뒤에 숨는 반면, 피해자 여성만이 노출되고 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은 계속해서 증대되어 왔다.

이 가운데 2018년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을 불법촬영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을 분노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과 주거지 압수수색, 그리고 피해 영상이 유포된 워마드에서의 2차 가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유례없이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었다. 불법촬영물

7) 글은 필자의 논문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urity)’을 근거로 한 규제 한계”(『아시아여성연구』, 57권 1호)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전방위적 압수와 이를 집단적으로 소비하는 행태에 대한 개입, 신속한 수사는 그간 줄기차게 여성들이 요구해왔으나 실현된 적 없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와 달리 특정 사건에서 공권력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여성들이 경찰의 능력 부족이 아닌 편파 수사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015년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여성의 몸에 대한 불법촬영과 그것의 소비가 남성들 간의 '놀이'이자 돈이 오가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그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소라넷'이 지적되고, 메갈리아가 불법촬영의 근절과 소라넷 폐쇄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남성들이 온라인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이어진 다양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 지금까지의 접수, 불법촬영물의 압수와 삭제, 2차 가해 행위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고통을 염려한 신속한 수사, 가해자에 대한 일관되고 확실한 처벌 중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공권력의 한계와 정책의 실효성 저하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야기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 글은 디지털 성폭력에서 발견되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간의 변화한 관계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한국 사회는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의 행정처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률을 이용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해왔다. 이 가운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음란성’은 규제 대상 및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했다. 디지털 성폭력의 대부분이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의 생산과 유포에 관련됨에 따라, 성적 표현의 음란성을 규제하는 기존 정책이 상당 부분 활용된 것이다. 촬영물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으로 두는 「성폭력 처벌법」, 불법촬영물의 유통 규제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 표현의 음란성에 의존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를 잘 드러낸다. 하지만 ‘음란성’을 근거로 한 규제는 사생활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의 개인적 법익보다 선량한 성풍

(風俗)이라는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민주화,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의 성적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나 관리 지침이 누적되면서 국가에 의한 성표현물⁸⁾ 규제가 강화되었다.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규제 정책의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법률이다. 동시에 형법적 규제의 비대화와 규제 체계 내부의 모순, 규제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규제 정책의 강화는 주로 여성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김소라, 2017). 이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뚜렷한 정책적·법률적 변화를 보이기보다 정세와 상황, 여론 등에 따라 상이한 행정력이 동원되는 경향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규제의 대상에서 주변화되거나 누락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의 붕괴와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 변화

(1) 식민지기 이후 성표현물 산업의 대두 및 성장

이미 1920~1930년대 여성의 나체 혹은 성적 행동을 재현한 그림과 사진, 남녀 간 포옹과 키스 장면 등을 담은 미국 영화가 조선에서 유행했으며, 이들 성표현물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각적 욕망을 추동·형성했다(정형민, 2011; 천정환, 2009). 1950년대 오락성과 이윤 획득이라는 상업적 논리를 추구하는 대중매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소설과 잡지, 영화 등에서 여성의 몸이 전면화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성애 묘사가 등장했다. 이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사람들의 눈을 매혹시키는 매력적인 상품이자 서구화 및 근대화의 화려한 스펙터클이었다(오영숙, 2007, 64~101).

이는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의 부재를 은폐하기 위한 유희책으로 여가와 유희를 활

8) 규제되어야 하는 성적 표현을 지칭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음란’ 혹은 ‘음란상’이다. 하지만 이 글은 ‘음란’, ‘음란상’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음란물로 지칭하는 문제 역시 있다고 본다. 이에 ‘성표현물(sexual material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성적 표현이 포함된 매체와 표현물 일반을 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문화정치’를 펼쳤던 박정희, 전두환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후반 관음증적 시선, 성적 자극을 위한 여성 육체의 파편화 등을 통해 상경 ‘처녀’가 도시 생활에서 순결을 잃고 여러 남성을 거치는 서사를 관습화한 호스티스 멜로드라마가 매년 인기를 얻었는가 하면(권은선, 2013; 박유희, 2012; 유선영, 2007),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부의 검열 완화와 함께 에로티시즘을 표방하는 성애 영화가 유행했다. 31만 관객을 동원해 1982년 최대 흥행작이 된 <애마부인>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후 1980년대 내내 가슴 노출, 여성 육체의 파편화, 욕망으로 가득 찬 여성 얼굴의 극단적 클로즈업 등을 통해 여성의 몸을 남성의 시각적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전시’한 성애 영화들이 그 어떤 장르보다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강소원, 2006; 유지나, 2004).

한편 민주화와 함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표현물 산업이 확대되고, 성적 표현의 수위 역시 높아졌다. 민주화로 인한 사전검열의 완화라는 정치적 기회구조, 매체의 다변화 및 국제적 문화 교류의 증대라는 사회적 조건의 변동 속에서 주간지와 월간지 등의 정기간행물, 만화, 스포츠신문과 국내외 누드 화보집, 소설, 영화, 에로비디오 등이 범람했기 때문이다. 매체 시장이 자유화되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성표현물이 수입·소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대중적 성표현물은 극장 상영 성애 영화에서 에로비디오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포르노그래피라 부를 수 있는 성표현물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 배경에는 급격히 성장한 비디오 산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85년 5%, 1987년 15%였던 가정용 VCR의 보급률은 1989년 30%, 1992년 50%까지 증가했으며, 비디오 대여점 역시 1989년 2만개, 1992년 3만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내 제작자들은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디오 사업으로 눈을 돌렸고, 극장 개봉을 위해 35mm 필름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닌 촬영 직후 비디오로 출시되는 16mm 영화가 늘어났다(조준형, 2005). 1980년대 성애 영화의 제작 경험 및 소비자층의 존재는 에로비디오의 대대적인 양산과 시장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5년 말 출시된 <젓소부인 바람났네>의 성공과 뒤이은 시리즈물의 제작은 에로비디오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문학산, 2004; 서정남, 2000). 이들 에로비디오는 표현주의가 아닌 리얼리즘 기법을 이용해 성 행위를 직접적·반복적으로 묘사했다(박진형, 2001; 이교동, 2000).

이와 함께 성표현물 유통과 소비의 범위 및 양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 성애 영화는 극장이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익명적 관계에 있는 다수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

. 반면 VCR과 에로비디오의 대중화는 성표현물을 또래 집단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소수의 이들과 함께, 혹은 홀로, 집이나 비디오방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소비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또래 집단 등 소규모의 사적 관계망은 성표현물의 유통과 소비를 매개했고, 성적 쾌락과 환상이 친밀한 대면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면서 남성적 연대가 공고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사와 같이 성표현물을 생산하는 산업, 비디오 대여점 등의 유통업자, 소비자 간의 경계는 여전히 분명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사진, 소설, 영화, 비디오 등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되었고, 유통 단계를 거쳐야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성표현물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 및 여성 몸의 파편화를 그 특징으로 했으나 여성 일반을 직접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디지털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도 않았다.

(2) 1990년대 후반 디지털 성폭력의 본격적 등장

1)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유통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의 붕괴

1990년대 중후반 PC통신 및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급은 성표현물 복제와 유포의 용이성, 유통과 소비에 있어 쌍방향적 소통의 가능성을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유통·소비되는 성표현물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통신사에 의한 회원 및 정보 관리가 용이하고 정보 유통의 속도 및 용량 역시 제한적인 PC통신과 달리, 무제한의 복사와 대용량 파일의 유포가 통제 없이 가능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인해 성표현물은 거대한 물질적·산업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존의 에로비디오보다 노골적·선정적인 성표현물과 불법촬영물을 제공하는 국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와 함께 에로비디오 시장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캠코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촬영된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이 동의 없이 유통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디지털 성폭력이 가시화되는 현상은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물론 DVD를 중심으로 한 영상매체 산업의 재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으로 인해 높아진 성인물예의 접근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활용한 동영상의 공유, 인터넷 성인방송, 이동통신사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연예인 화보 등도 성표현물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새로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컴맹 탈출에 기여”하고 “한국을 정보통신강국으로 만든” 것은, 그리고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 양상의 질적 변화와 동시에 디지털 성폭력의 본격적 등장을 보여준 것은 여성의 의사에 반한 실제 성행위의 촬영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그것의 유통 및 소비였다.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 촬영 기술의 발전, 대용량 동영상 파일의 복제와 전송이 쉬운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급은 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실제 성행위를 촬영, 유포,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관음증적 욕망, 여성 섹슈얼리티의 대상화, 성기 중심적 쾌락 등 남성들의 성적 욕망이 자본과 국가의 방관하에 용인되는 가운데, 영화나 비디오에서 발견되던 ‘연기된’, ‘허구의’ 성적 표현에 대한 선호는 실제 성행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선호로 대체되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과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실체가 아닌 허구적 성행위의 반복적 재현은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엄기호, 2000; 조흡, 2000). 이 시기 인터넷 성인 방송의 선풍적 인기 역시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추구라는 측면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중, 특히 일반 남성들이 직접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실제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그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익명화된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기업화된 플랫폼이 여성 이미지의 유통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으나, 동시에 이를 유포하는 개인에게 유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게 되었다. 이제 남성들은 성표현물의 생산자인 동시에 유통업자와 소비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없는 불법촬영과 그것의 (재)유포 및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성표현물의 생산·유통·소비가 그 자체로 디지털 성폭력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2) 디지털 성폭력에 ‘홀로’ 또 ‘함께’ 참여하기

에로비디오의 쇠퇴, PC통신의 등장과 몰락,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급 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성표현물의 생산·유통·소비 방식과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전까지와 달리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성표현물의 소비는 또래 집

등 사적 관계의 친밀한 이들 속에서도 아니라 ‘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문자, 사진, 영상에의 접근과 소비를 매개하는 가운데, 그 어떤 매체보다도 성표현물의 소비는 완전히 개별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친밀한 이들과 동일한 물리적 시공간에서 함께 성표현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줄어들었고, 성표현물은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즐기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소비되는 성표현물의 다수가 불법촬영된 이미지와 동영상이고, 그것의 유통과 소비에 있어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비대면적 관계와 익명성을 전제로 한 디지털 성폭력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쌍방향성 매체인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불법촬영물의 공유, 감상, 비평이 이루어졌고, 이는 시공간을 압축시킴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에 참여하는 이들의 규모를 증대시켰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유출, 소비되는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유명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마비가 종종 발생하는 등, 익명성 속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참여하는 이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1998년 「성폭력 처벌법」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신설되고 2006년에는 촬영뿐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규정되었지만,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의 (재)유포와 소비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라넷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성들은 자신 혹은 타인이 불법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사이트에 (재)유포함으로써 이를 공유·소비했고, 칭찬과 부러움, 불법촬영물에 대한 평가와 같은 다른 남성들의 반응을 즐기는 가운데 쾌락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미지로 박제된 여성의 몸을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그리고 ‘홀로’ 착취하지만, 익명적 관계에 있는 이들의 매개와 공유 등을 통해 ‘함께’ 착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성표현물 생산, 유통, 소비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자,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남성 연대는 대폭 확장되었다. 로라 멀비(Laura Mulvey, 1989)는 영화 속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에게 ‘보이기’ 위해 재현됨으로써 수동적 위치에 놓이며, 남성은 여성을 ‘봄’으로써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시선이 곧 권력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디지털 성폭력에서도 발견된다. 불법촬영을 통해 사진 혹은 영상으로 박제된 모습이 오로지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써 남성 집단 내에서 소비될 때,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남성은 언제나 원하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획득하게 된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해 관음증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익명성에 기대던 남성들 간의 불법촬영물 공유를 통해 '훔쳐볼' 수 있는 여성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이미지의 착취에 기반한 남성 문화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가 광범위하게 재생산된다.

(3) 2000년대 후반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화'

1) 뉴미디어와 여성 일상의 포르노화

뉴미디어는 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컴퓨터 기술,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미디어를 의미한다. 2000년대 후반 직접 촬영한 동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고, 개인 컴퓨터 간 파일 공유를 연결하는 P2P 프로그램 및 사용자들에게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가 상용화되는데, 이는 뉴미디어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 소비하는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들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성표현물의 다수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공공장소나 개인 간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디지털 성폭력이 심화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대중화로 모바일 환경이 확대된 가운데 불법촬영과 그것의 유포가 더욱 용이해졌고, 디지털 성폭력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화되었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고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적인 매체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상에 접속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가운데 누군가의 몸이나 성행위를 직접 촬영·유출하는 일 더욱 역시 빈번해졌고, 이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공유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직접 촬영한 이미지나 불법촬영물을 주고받거나 사고팔고, 동의 없이 여성의 사진을 합성·변형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역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의 증가는 이를 매우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6년 517건에서 2010년 1,153건으로, 2015년에는 무려 7,730건으로 증가하며, 2016년에는 5,249건으로 다소

수치를 보여준다(대검찰청, 2017,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 건수 역시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증가하며, 2012~2016년 사이 총 1만 5천여 건이 넘는 개인 성행위 정보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물,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과 합성·변형한 이미지, 개인 성행위 동영상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SNS, 소라넷, 꿀밤, 일간베스트와 같은 익명화된 커뮤니티, P2P 프로그램과 웹하드를 통해 남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⁹⁾ 이 가운데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는 더욱 흐릿해졌고, 놀이와 폭력 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은 보다 쉬워졌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들의 거대한 관음증적 욕망, 여성의 몸을 ‘음란물’로 착취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한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더 나아가 일상 전반의 파편화와 포르노화를 함께 불러왔다.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성적 행위 속에 놓여있지 않는 여성의 몸까지도 오로지 남성의 성적 쾌락 추구를 위해 분절되고 포르노화 되었다. 디지털 성폭력 속에서 여성 몸의 모든 부분과 행위가 성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몸과 일상생활 전체, 더 나아가 여성의 인격 모두가 그녀의 섹슈얼리티로 환원되고, 이는 오직 ‘음란’한 것으로 착취되는 동시에 그 이유로 비난받았다. 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연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는 새에 촬영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박탈되고 일상 전반이 제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익명적, 준-익명적 관계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화’

P2P프로그램과 웹하드의 상용화,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의 보급, SNS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설명되는 뉴미디어의 발전은 정보교류의 방식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전히 철폐했다. 이와 함께 성표현물의 소비와 디지털 성폭력에의 참여는 완전히 개별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

9)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포르노그래피 역시 P2P 프로그램과 웹하드를 통해 계속해서 유통되었다. 일례로 2009년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유통시킨 국내 네티즌 수천 명과 웹하드 업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상업화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온라인을 통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의 소비가 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디지털 성폭력에의 연루도 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면서도 익명적 관계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이를 ‘즐기는’ 양상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더욱 강화된다. 온라인의 익명적 관계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포·공유함으로써 그것의 유통을 매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를 비평·변형·창작했다. 불법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은 이를 ‘홀로’ 소비하는 순간이 아니라, 온라인에 접속해 상호 비평을 통해 그것을 함께 소비할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획득했고, 이 가운데 쾌락이 구성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성폭력이 보다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적 행위 속에 놓여 있지 않은 여성의 몸을 불법촬영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쾌락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이 지속되는 까닭은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 그것이 남성 집단에서 공유될 때, 착취의 대상이 된 여성을 평가하고 비난할 때 그것이 즐거운 ‘놀이’가 되기 때문이다. 성적 의미가 보다 명확한 개인성행위 동영상 역시 그 유포와 소비 양상은 유사하다. (재)유포된 성행위 동영상 속의 여성을 비하, 모욕, 분류, 평가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획득된다(김영희, 2017; 박수연, 2016).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촬영물을 집단적으로 공유·비평함으로써 폭력을 놀이로 의미화 할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이 가운데 작동하는 남성 연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법촬영물의 집단적인 공유,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유포하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게재, 강간 모의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소라넷이 그 사례다. 2009년 사이트 차단에 대비해 바뀌는 주소를 공지하는 트위터 계정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소라넷은 익명화된 네트워크가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 갖는 위치를 보여준다. 소라넷뿐 아니라 AVSNOOP, 꿀밤 등 유사 사이트들은 불법촬영물을 많이 올린 유저의 회원등급을 높여주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남성들의 참여와 경쟁심을 부추겼고, 성매매 업소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료를 받는 등 자체적인 수입 구조를 갖추으로써 그 자체로 유지되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직접적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 집단 전체가 성적 쾌락을 위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평가절하와 비하, 모욕과 단죄의 대상이 되며, 여성의 몸과 일상 전체가 파편화, 포르노화된다. 이 같은 경향은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소비에 SNS가 접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성폭력이 익명화된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이전에는 현실의 대면적 관계와 온라인의 익명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텀블러,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와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성폭력에의 참여는 익명적 관계뿐 아니라 준-익명적 관계를 활용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지인능욕’과 단톡방 성폭력 사건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실 세계의 관계와 맥락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과정’에 활용되면서 더 많은 ‘재미’가 보장되게 된 것이다.

쿠퍼스미스(Jonatha Coopersmith)는 인터넷이 포르노그래피의 생산, 유통, 소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접근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포르노그래피를 ‘민주화’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Coopersmith, 2000). 그렇다면 다양한 플랫폼과 모바일환경의 구축은 성표현물의 창작과 변형, 상호비평과 공유를 손쉽게 만듦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을 ‘사회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익명화된 인터넷 사이트, 준-익명화된 SNS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이 게시되고, 이에 대한 의견 개진과 상호 비평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비·변형·창작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불법촬영물의 개별적 소비와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성폭력에의 집단적 참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의 생산·유통·소비에 관여하는 이들에 의한 집단적 범죄인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로 이해되면서, 남성들은 불법촬영물의 소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이 재생산된다. 포털사이트, P2P 프로그램, 웹하드, SNS 등의 사업자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불법촬영물 검색을 제한하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14년 국회를 통과해 2015년 시행되었다.¹⁰⁾ 그러자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이 법률을 이른바 ‘딸통법’(자위 통제 법률)이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불법촬영물이 ‘민주화’되었는데, 국가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정책을 펼침으로써 성적 쾌락의 추구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것의 소비에 있어 계급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이는 일찍이 게일 루빈(Gayle Rubin, 2015)이 ‘여성-거래’(the traffic in Women)라 부른 것, 즉 남성 간 관계와 연대의 유지를 위해 여성이 교환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오늘날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의 섹슈얼

10) 한국에서는 유출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국산 야동’ 등으로 불리며 하나의 취향으로 소비되어 왔다. 이에 웹하드와 P2P 프로그램 등에서 유출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임을 암시하는 ‘국산’, ‘국노’, ‘국NO’, ‘유출’, ‘몰카’, ‘골뱅이’ 등의 검색어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유포와 유통, 소비 등을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다.

특정 이미지로 고착시키고, 남성들이 교환하는 여성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이 같은 ‘여성-거래’를 현대화하고 있다.

3.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와 그 부정적 효과

(1)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의 실패

식민지기 일제는 ‘선량한 풍속’의 수호를 명목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했고, 이는 해방 이후 성표현물 규제의 이념적·사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일례로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및 제조죄, 공연음란죄를 포함하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여전히 ‘건전한 성도덕’ 혹은 ‘미풍양속’이라는 모호한 실체이다. 이 같은 유제(遺制) 속에서 한국의 정책은 음란성을 근거로 성적 표현을 규제해왔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그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법률들에도 이 같은 경향이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현재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법률 중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제공, 유포, 판매하는 행위(제1항),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 판매, 전시하는 행위(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제3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의 여타 조항들과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라는 감정의 영역을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불필요한 요소를 범죄 판단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이분화하고, 여성이 겪는 피해를 성적 수치심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비판되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남성적 시선과 범죄를 발생시키는 구조 모두가 정당화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김현아, 2017; 최란,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2008).

또한 이로 인해 그간 처벌의 일관성과 확실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은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기소율이

, 처벌 역시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그 수준이 낮았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가 함의하는 바에 관한 법률적 합의가 부재함에 따라 기존의 남성 중심적 인식과 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이 판결에 반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처벌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판례들은 사법부가 주로 무릎 위 허벅다리, 치마 밑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전신 촬영, 노출이 심하지 않은 여성의 촬영, 친밀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촬영,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행위 등은 사법부에 의해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김영철·조현욱, 2016; 김현아, 2017; 배상균, 2016; 최란, 2017).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신설된 1998년 이래 계속해서 범죄 구성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대법원 2006.4.28. 선고2003도4128) 음란과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당사자의 동의 없는 불법촬영 및 유포 뿐 아니라 음란한 성적 표현의 생산과 유통 행위의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법익을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대법원2014. 7. 24 선고, 2014도6309)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음란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며, 결국에는 해당 법률의 보호 법익이 모호한 상태에 놓이고 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가해자 처벌 조항만이 존재하며, 피해를 구제·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이라는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여전히 개별의 구체적 피해자, 더 나아가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란성을 근거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함에 따라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모두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2)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의 방조와 피해의 가중

성폭력 처벌법」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의 대응에 주로 활용되는 또 다른 법률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둘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표현물의 유통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입의 대상이 다소 다르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전시, 유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의 1항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의 처벌과 영상물 삭제 등 피해의 구제에 주로 이용된다. 반면 웹하드, P2P 프로그램 사업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상시적인 음란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3의 1항은 음란물 유통과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업자의 규제에 활용된다. 많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촬영 및 유포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뒤늦게 인지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판매를 예방.처벌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두 법률 모두 음란성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활용하며,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의 구제 및 특정되지 못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촬영물의 음란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몸과 섹슈얼리티에서 음란성의 근거를 찾게 된다. 예를 들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여성의 이별 통보를 잘못된 행위로, 남성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를 정당한 복수로 포장하고, 복수만이 불법 촬영물 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피해를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골적 표현을 의미하는 포르노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성표현물의 음란성은 텍스트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 유포, 소비, 규제하는 가운데 구성되는 것인데, 불법촬영물을 음란물 혹은 포르노라고 부름으로써 규제의 근거와 음란성의 책임을 재현과 착취의 대상에게로 전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을 음란물이나 포르노로 지칭하게 될 경우, 이를 생산.유포.소비하는 이들이 아닌 재현과 착취의 대상인 여성과 그녀의 몸을 음란한 것으로 명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규제의 근거를 재현되는 대상의 음란성에서 찾을 때,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욕망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인지되며, 동시에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일상적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1990년대 후반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유포와 소비가 알려졌고, 2000년대 후반 공공장소와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는 호기심 충족을 위한 일상적

, 일부 남성의 일탈적 행위, 여성의 신체 노출에 자극받은 순간의 실수 등으로 문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의 주위와 무음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단속 등이 요구되었으며, ‘실제의’, ‘현실의’ 여성 몸과 성행위를 훔쳐보고자 하는 관음증적 욕망 및 이를 허용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사회적·정치적 무관심이 지속될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단속은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집중되었는데, 이때 여전히 많이 적발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었다. 2012년 5~10월, 2013년 4~10월에 실시된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이들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범은 약 30% 정도였다. 또한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에서는 204건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여타 중점심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119). 이처럼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단속에서 언제나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과 해외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였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불법촬영 문제가 공론화된 2015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폭력의 현실은 외면되었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정책적 관심의 바깥에 놓여있었다.

(3)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저하

앞서 살펴보았듯 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변화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나타난 디지털 성폭력과 그것의 ‘사회화’는 불법촬영물이 재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유통·소비·변형하는 ‘과정’ 전반이, 그리고 이때 작동하는 젠더화된 시선이 폭력으로 인지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이 갖는 핵심적 지위이다. 그것이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어렵게 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재유통과 소비가 산업적 기반을 갖게 되면서 이 같은 경향은 심화되었다. 성매매 업소와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는 광고료로 수익을 올린 소라넷, 꿀밤,

AVSNOOP 같은 사이트들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들의 참여와 경쟁심을 부추김으로써 불법촬영물의 업로드를 장려했다. 또한 이들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들은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해 수익을 챙겼는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매개하는 산업이 물질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2016년 소라넷의 해외 서버를 압수.폐쇄한 경찰은 회원 수만 100만 명을 넘는 이 사이트의 운영진이 1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꿀밤을 운영한 이들도 단기간에 1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이 재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이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시선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필수적인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일상생활 전체가 위축되는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영속화하는 이 같은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중단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어의 대응에 있어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피해자 자신이 고통 속에서 직접 불법촬영물을 찾아 헤매거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월 200~3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촬영물의 삭제를 계속해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의 재유포에 대한 규제는 많은 한계를 보여준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볍게 처벌할 뿐 아니라, 후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더라도 가중처벌 하지 않는다.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각각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촬영 시 동의여부에 따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타인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재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가 모호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이 변형카메라의 판매 제한에서부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기에서도 불법촬영물의 재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방지.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음란성을 근거로

재유포 행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규제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화'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의 광범위한 재유포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한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의 없는 불법촬영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률과 정책이 여전히 음란성을 근거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최초 유포 행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공론화된 사실은 그 자체로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이를 규제하는 정책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정책의 한계와 비효율성이 증폭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누가 음란한가

1990년대 후반 이미 확연히 변화한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은 일상의 포르노화를 낳으며 재현과 현실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단순히 매체기술의 발달로 신종범죄가 등장한 데 따른 일시적 공백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폭력은 신종범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정책적 무관심의 역사적 누적의 가해의 조건을 구축하고 규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남성들이 시선의 주체로서 일상 속 모든 관계망을 활용해 여성을 착취하는 동시에 착취의 대상인 여성들이 '음란'하다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여성들 간의 분류와 구별 짓기를 통해 '일반인' 여성의 순수함이라는 불가능성을 욕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이는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모든 여성을 포르노화했기에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욕망이지만, 욕망이 좌절되는 원인을 '음란'한 여성에게서 찾음으로써 심각한 폭력이 '놀이'로 정당화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가 지속된다.

이 같은 디지털 성폭력의 현실은 포르노그래피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이해를 여러 각도에서 갱신할 필요를 제기한다. 포르노그래피에 나타나는 재현과 실제 폭력 간에 거리가 존재했던 1970년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둘 간의 상관관계("포르노그래피는 이론, 강간은 실천")를 주장함으로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성폭력 양상의 변화와 함께 성표현물의 생산·유통·소비가 곧 실제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통

소비가 일반 대중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여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개별 여성뿐 아니라 여성 집단에 대한 비하와 조롱, 모욕과 혐오 등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미지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과 관계가 아닌 성적 표현의 노골성과 선정성을 문제 삼는 현재의 규제정책은 이 같은 현실에 무력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는 이미지로 고착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착취하는 산업의 정치경제학, 이때 작동하는 남성들의 카르텔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P2P, 웹하드 등 유통 플랫폼과 이들 업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련 업체 간의 유착관계, 유통 플랫폼들이 불법촬영물은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기는커녕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정황 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해온 바 있다(서승희, 2017).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로 포장된 이들 산업에 국가는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정보통신산업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며 이윤을 획득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유통은 화폐를 지불하고 여성 이미지를 구매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야기되고, 이미지가 생산된 과정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가 정당화되며, 디지털 성폭력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 젠더권력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인식하며, 일상에서 공포와 불안, 분노를 느끼는 이유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이 중 누가 음란한가,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자를 음란하다고 낙인찍을 수 있는 것이 젠더 권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포르노로 소비하면서도 도리어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고 낙인찍는 사회, 이미지의 유출이 여성의 통제를 강화하고 여성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공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남성들의 일상적인 놀이 문화로 여겨져 온 디지털 성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두려움이 그간 책임을 면해온 남성들을 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차별적인 젠더관계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를 해소할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정치의 경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Coopersmith, J. 2000. "Pornography, Videotape, and the Internet".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19(1). 27-34.

- Mulvey, L. 1989. "Visual Pleasures and Narrative Cinema". In *Visual and Other Pleasure*, 14-26.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ubin, G. 2015. "1 여성거래: 성의 '정치경제'에 관한 노트". 신혜수 외 옮김. 『일탈: 게일 루빈 선집』, 89-147. 서울: 현실문화.
- 강소원. 2006. "1980년대 한국 '성애 영화'의 섹슈얼리티와 젠더 재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은선. 2013. "유신정권기의 생체정치와 젠더화된 주체 만들기: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 하이틴 영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 417-444.
- 김소라. 2017. "1987년 이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구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철.조현욱. 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판결". 『법학연구』 57(3), 151-177.
- 김영희. 2017. "몰래카메라: 시선의 주체와 포획된 신체". 『황해문화』 97, 52-80.
- 김현아. 201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문학산. 2004. "에로비디오의 섹슈얼리티: 시선을 호객하는 몸, 남근이 된 시선. 유지나 외 공저.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187-224. 서울: 생각의 나무.
- 박수연. 2016. "디지털 성범죄 실태 보고서".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16.11. 29).
- 박유희. 2012.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 42-90.
- 박진형. 2001. "대체된 포르노그래피: 1990년대 후반 한국 에로 영화의 양상". 『영상예술연구』 1, 187-20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방송통신심의 연감』.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배상균. 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199-227.
- 서승희. 2017.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59-95.
- 서정남. 2000. "젓소부인을 훑쳐보는 시선들". 디자인문화실험실 편. 『디자인과 성』.

- 68-81. : 안그래픽스.
- 엄기호. 2000. 『포르노 all boys do it!』. 서울: 우리교육.
- 오영숙. 2007. 『1950년대, 한국영화와 문화담론』. 서울: 소명.
- 유선영. 2007. “동원체제의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섹스영화: 데카당스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5(2), 2-56.
- 유지나. 2004. “여성 몸의 장르: 근대화의 상처-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유지나 외 공저.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77-98. 서울: 생각의 나무.
- 이교동. 2000. “젓소부인을 위한 변명”. 고길섭 외 공저. 『문화읽기: 뼈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 479-487. 서울: 현실문화연구.
- 정형민. 2011.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403-442. 서울: 소명출판사.
- 조준형. 2005. “한국영화산업과 정책: 198~1997”. 유지나 외 공저. 『한국영화사 공부. 1980~1997』, 143-205. 서울: 이채.
- 조흡. 2000. “맑스, 프로이트, 그리고 <O양의 비디오>”. 고길섭 외 공저. 『문화읽기: 뼈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 489-517. 서울: 현실문화연구.
- 천정환. 2009. “관음증과 재현의 윤리: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적 시각”의 성립에 관한 일 고찰”. 『사회와 역사』 81, 37-68.
- 최란. 2017.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짧은 치마 있는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가 무죄? 법원의 몰성적 (gender-blind) 판결과 황색언론은 유죄!”. (3월 25일)
-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2008.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몰카’는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월 24일)

< 토론 1 >

처벌법의 내재적 불평등: 성폭력 범죄의 법익침해, 그 구성

장임다혜(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1. ‘음란’과 성폭력의 모호한 경계: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써 ‘음란’

○ 형법상 ‘음란’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에 대해, 제244조(음화제조 등)에서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제245조(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음란’의 개념: 판례는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으로 보고,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말하며 그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되어야 하며,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음란을 “사회통념 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대법원 2017.10.26. 선고 2012도13352 판결)하여 음란의 법해석상 변경이 없음.

→ 음란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건전한 사회통념’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특정인의 주관적 관점과 다름. 이러한 판단기준은 음란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가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닌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

○ 성폭력범죄의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표제 하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표제 하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동조제1항)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물인 경우보다 낮은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음란이라는 구성요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기본행위를 음란물로 두고 음란한 물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 자체가 음란물이 되게 할 때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추가하여 법정형을 높힘.

→ 판례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제작 및 유포 등에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서 음란물 제작 및 유포행위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동의 없는 피해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그 입법 목적이 “수신인인 피해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라고 보아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로 보고 있음.

○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에 내재한 음란의 개념

- 형법상 ‘추행’: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8.02.08. 선고 2016도17733 판결)로 해석.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요소인 추행의 법해석 기준 역시 음란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라는 정서와 선량한/건전한 성적 사회통념임.
- 이러한 법적 해석이 이루어졌던 배경에 대해서는 일제식민시시기 일본 형법을 의용하여 적용했던 역사와 및 일본의 형법개정안을 참조한 우리 형법제정의 과정을 고려하여 일본 형법의 변경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우리 형법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개인적 법익침해 범죄는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공연음란 등 사회적 법익침해 범죄는 제22장(성폭속에 관한 죄)에서 다루고 있으나, 현행 일본형법은 강간, 강제음란(추

행), 공연음란죄를 모두 22장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에서 다루고 있어,¹¹⁾ 성폭력을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별없이 하나의 장에서 다루고 있음. 우리의 경우, 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구분하여 성폭속에 관한 죄(제22장)와 정조에 관한 죄(제32장)를 구분하였음.

○ 성폭력의 침해적 속성과 성폭속 대한 판단기준 적용의 불일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되며, 음란물 제작 또는 유포행위 자체가 특정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자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와 차이가 있으나, 피해여성 개인의 신체와 인격,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로 새롭게 구성된 것임.
- 그러나 주로 음란물의 개념을 기본적인 행위유형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기본 행위의 속성이 음란행위(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음란의 개념은 피해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은 사회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과 관련하여 구축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의 핵심이 되며, 비록 일반적인 피해자가 이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성적 사회통념이라는 음란물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 카메라이용등촬영죄

11) 강제추행을 도입한 명치13년 구형법에서 강제추행을 강간죄의 선행규정으로 두면서, 강간을 폭행협박으로 남녀의 정욕을 완성하는 것, 즉 간음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은 폭행으로써 외설의 소행을 하는 것은 남녀의 정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의 음부 등을 보임으로써 우롱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권창국(2016), 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서 ‘폭행’의 해석과 기습추행,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2016.12.20.), 5-6쪽.

와 관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 전신이 촬영된 경우 내지 양말을 신은 발이 촬영된 경우를 이른바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법해석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음란의 개념에 비추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인지 여부를 평가한 것임. 현재 관련 판례 대부분 촬영 부위가 성적 부위인가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¹²⁾ 이러한 해석의 기준에 따르면 은골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복 사진이나 일상 사진 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화장실 몰카 중 성기가 보이지 않는 촬영물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움. 그러나 촬영 및 유포로 인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에, 촬영물을 음란물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은 해당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2. 음란 표현물 원본/미러링에 대한 처벌법의 불평등한 작동

○ 음란이라는 사회적 윤리 개념의 남성편향성

- 일반인의 성적 정서나 건전한 사회의 성적 통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음란’ 개념은 사회적으로 ‘성적’이라고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행에 근거하여, 그러한 관행을 벗어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에 이르는지 정도에 따라 범죄가 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문제가 되는 표현물의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적 욕망의 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주된 기준으로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질서와 윤리라는 법익침해를 범죄로 구성함으로써 같은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닐 때에 비로소 선량한 사회통념의 위반이라는 침해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임. 이러한 사회적 윤리나 질서의 침해행위

1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4고단885 판결; 전운경(20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113-144쪽 관련 판례의 소개와 비판적 분석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한 해악의 원리와 근대 자유주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서구사회는 근대 법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윤리에 기초한 범죄구성을 삭제해왔으며, 이를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개념으로 구성하여 처벌과 규제의 어려움과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옴

- 페미니스트 운동과 연구들은 오히려 외설 표현의 정도가 아닌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해왔음. 남성에 대해 종속되고 침범당하는 여성의 대상화(objectification)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표현물로서 포르노그래피가 남성에 의한 여성종속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성정치학의 실천이자 젠더 불평등의 제도”¹³⁾이자 젠더폭력이라고 비판함.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남성중심적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구성을 정상화하는 재현물 자체가 젠더 폭력인지 그러므로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음란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성적 표현물이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그리고 주된 도구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그러나 음란물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여성의 신체를 사물화하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성적 부위를 어느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음.

- 온라인상 여성혐오에 대한 대항발화와 남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이질성
 - 맥키논과 드워킨이 지적대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주된 실천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성적 조롱이나 대상화, 더 나아가 혐오 표현은 기존의 사소한 모욕 또는 광범위하게 유통됨에도 처벌되지 않는 음란물 사이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됨.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나 여성혐오표현보다 훨씬 불법적이고 침해적인 내용으로 인식됨. 그러므로 이미 불평등한 섹슈얼리티의 작동은 여성과 남성의 같은 행동에 대한 다른 처벌법의 대응으로 나타나게 됨.

13) Catharine A. MacKinnon(1987),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p. 148. 같은 논지의 글로 Dworkin, A. (1989)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New York: EP Dutton 참조.

○ 처벌법의 불평등한 작동에 대한 거부

- 이번 홍대 남성 모델 몰카 사건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은 앞서 설명한 현실의 반영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표현에 소극적이었던 사법 및 경찰권력이 남성이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그동안 경미하거나 규제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온 사회의 성적 윤리 위반 행위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였기 때문임.
-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여성을 강력히 처벌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개인에 대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대응을 중단해왔던 사법작동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임.

3. 평등한 처벌을 위한 성폭력 법익 침해의 재구성

○ 성폭력 등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드리워진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 판단 기준의 제거

- 성폭력범죄행위가 개인적 법익 침해이며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음란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을 구성요건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음란이라는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습, 기질 등의 성품, 보호받을만한 정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거의 법해석을 변경해야 하며, 피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향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둘러싼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결별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함.
-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로서 보호법익의 구성방향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바탕이 되는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보호법익의 설정 하에서 사생활 침해를 가장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여기에 성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가중적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혐오의 실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현재의 법제도에서 규제하기 어려움. 이에 대해서는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원리 및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특성(성별 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여기에는 차별이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활용하여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차별로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토론 2 >

디지털/사이버성폭력¹⁴⁾은 누구의 시선으로 ‘판단’되는가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

1.

2015 , 강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소라넷’ 사이트의 존재와 헤어진 전 연인에 의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이른바 비동의성적촬영 및 유포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면서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 PC 통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부터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200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Delete! 사이버성폭력』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특징, 대처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이버 성폭력은 ‘sexual violence’의 측면만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자 광의의 성폭력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정보, 교육 과정이 여성을 배제하고(이선영, 1999),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화된 채팅문화가 현실공간에서 성별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윤세정, 1999).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여성의 사이버 공간에의 접근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

14)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란(2017)은 앤더슨의 논의를 빌려와 ‘이미지 착취’ 성폭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석사학위논문.

, 당하는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는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은 젠더의 문제이고, 현실 성폭력의 반영(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십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과 인터넷 공간에서 성적 영상물의 상업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혐오 표현, 욕설의 내용과 공간, 수위는 더욱 세분화, 확장되었다. 대중들은 이를 ‘여성혐오’의 일부이거나 성폭력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혐오에 치를 떤, ‘자생적’ 페미니스트들의 등장으로 디지털/사이버 성폭력은 현재 성폭력의 유형들 중에서도 특화된 운동의 영역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은 여성다움, 여성으로 보이는 옷차림, 행동, 노출의 부위나 정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 타겟화되고 법적으로 승인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라는 성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¹⁵⁾이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그 구성 요건에 있어 법관의 주관적인 해석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남성의 인식을 대변하고 사소화함과 동시에 기존의 여성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최란, 2017)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공공장소에 대한 학습된 공포, 내면화된 공포의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여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 글에서는 오늘 발제자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판례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사이버 성폭력의 판단기준, 발생 현황과 기존 성폭력과의 관계와 경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5) 2017,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일반권고 19호를 업데이트하는 35조 :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은 가정, 커뮤니티, 공공장소, 직장, 여가, 정치, 스포츠, 보건서비스, 교육 환경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현대적 형태의 폭력과 같은 기술 매개의 환경(technology-mediated environment)을 통해 재정의된 공적, 사적 영역을 포함하여 인간 상호작용의 모든 장소와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차별의 일부이며,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여성보다 우월한 남성의 권리와 특권이념,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 남성의 지배와 힘을 행사하고 성적 역할을 강요할 필요성, 허용될 수 없는 여성의 행동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막거나 단념하게 할 필요성과 같은 성 관련 요소들을 근간에 두고 있다고 본다.

2. 시선은 누구의 시각을 대변하는가

1) 타자화된 몸 - 분열된 인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¹⁶⁾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¹⁷⁾

발제문들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판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신체 부위의 ‘선정성의 정도(2014고단2013판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판례들은 여성을 몸의 경험과 정서가 통합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화된 몸-분열된 인격’ 속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수치심’을 증명해내야 하는 약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분리해서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보는 사람’의 입장이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당하는 사람’, 피해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범죄를 구성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판단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가해자 시각에서의 ‘신체 부위’이며, 사진 찍힘을 당하는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판례들은 찍는 사람과, 그 찍은 부위, 각도 등에 있어서, 남성 중심적 시선을 동일시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와 찍힘을 당한 여성의 권리 침해는 분열되어 타자화된 방법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여성이 남성을 찍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기소되었다면, 어떤 부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할 것인가. 소위 ‘남성누드촬영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남성의 성기’를 성적욕망을 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판단한 것 같다. 여성의 성기도 남성의 성기도 찍히거나 유포되었을 경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신체부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수사와 대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누구의 ‘성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반문하

16) 법에서 해석되는 성적 수치심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명명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한다.

17) 이 장은 2014년 2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개설 수업, [법여성학의 쟁점]에서 김보화가 작성한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사건 관련 판례평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2008노1386판결, 대법원 2008.9.25., 2008도 7007판결]”을 일부 참고하였다.

된다.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두려움을 일으키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은 불의 사용과 돌도끼의 발명과 함께 선사시대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아야만 한다.”¹⁸⁾는 수잔 브라운밀러의 명언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러나 남성의 성기가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와 맥락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성기는 여성을 위협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혹은 ‘성기’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신체의 지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여왔고, 때로는 특정 성(여성)의 성기가 다양하게 착취되어 왔음이 왜 무시되어왔는지 질문해야 한다. 또한 누구의 범죄는 ‘호기심’¹⁹⁾이고, 누구의 범죄는 ‘빠르고 엄중한 수사 와 대처’의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2) 옷차림, 노출의 정도와 책임의 전가 :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3. 2014고단2013판결에서 가해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였으나, 재판부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일반적 눈높이에서 촬영한 점,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나 과도한 노출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즉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구성 요건 중 하나는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이고, ‘피해자의 노출이 과도하지 않은 점’, 그러므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지 않음’은 무죄판결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이 말은 역으로 과도한 노출을 한 여성을 촬영했다면, 유죄로 판결된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노출을 많이 한 여성은 사진에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강간 신화에서 ‘여성이 짧은 옷차림을 함으로써 먼저 유혹했다’거나 ‘피해자도 원했다’라는 통념과 유사한 맥락이다. 피해자의 노출이 과도했다면, 가해자의 유죄 입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여성이 먼저 상

18) 저, 박소영 역(2018),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오월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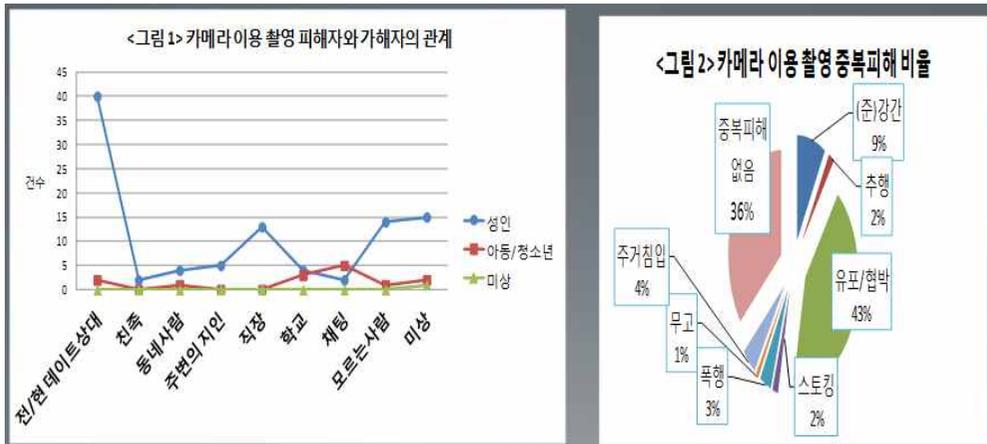
19) 설치형 피해자가 경험한 인터뷰 내용: “00가 이러는 거예요. “호기심에 몇 번 했다고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 받아서, “누가 그러던데요?” 이랬어요. 경찰도 아직 조사 제대로 안 된 건데, 호기심이, 아니 이게 약간 감싸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러니까, “아 그런 게 있다고, 너는 몰라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모르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한 한 시간동안 제가 계속 싸웠어요. 관리자들이랑. 싸우는 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 먼저 말을 왜 안 했으며 애는 호기심에 했다 하더라.”,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참고

성적 욕망을 느끼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자 여성의 책임이 된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발생 후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옷차림으로 인해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명시된다’는 것은 유/무죄를 넘어 결국 여성의 ‘평소 행실’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 된다. 즉 ‘옷차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사회에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가 남성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그것이 때로는 촬영에 까지 이르게 하므로 여성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가해자/남성들이 느낀 ‘성적욕망’에 대한 책임조차 여성/피해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옷차림을 한다면, 카메라이용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불행이 생기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성적욕망을 일으켜야만’ 향후 법적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여성이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관계없이, 사이버성폭력은 아무리 조심해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의 2015-2016년 카메라이용촬영 상담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71%에 달했으며,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동의 없는 촬영을 포함하여 ‘이별보복 사이버 성폭력’의 형태로 현,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높았다. 특히 10회 이상의 지속 피해는 11건으로 모두 전/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였다.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수차례 촬영을 저지른 경우도 8건에 이르렀다.²⁰⁾ 디지털/사이버 성폭력은 이제 단지 ‘가상 상황’이 아니다. 조건만남(몸캠피싱), 준강간(술과 약물),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길거리괴롭힘), 데이트 성/폭력(아는 사람 관계에서 ‘이별보복 성폭력’이 36.8%, 울림, 2017) 등 현실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데이트 관계는 외견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 간의 성적 결합으로 보이지만, 스토킹, 촬영, 유포, 유포협박에 있어서는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자하는 남성성의 수행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김보화, 2017).

20) 조소연, 2017,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 2015~2016년 상담일지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37쪽



: 조소연(2017), “2015-2016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상담통계 분석”,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p.36.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의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중에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 한 사례는 2015년도에는 46%(50건 중 25건)로, 그중 유포/유포협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84%(21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관계유지를 요구하고 거절시 유포협박을 하는 경우는 7건,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소라넷 등 몰카 영상 유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유포되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는 14건이었다.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 유포협박을 받는 경우 실제로 영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게 되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3. 성폭력과 관계²¹⁾

기존의 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의 두드러지는 몇 가지 차이 중 하나는 피해자가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추지현님의 발제에 언급되었다시피 ‘범인을 안 날’의 판단 기

21) 이 부분은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올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일부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의 하에 성관계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그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의없이 유포, 재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 하는 순간부터 범죄는 성립된다. 그러나 비동의영상유포의 경우 범죄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범죄와 판단기준의 문제뿐 아니라 유포 시기와 공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피해자가 막연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과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기존의 성폭력이 언어적, 물리적인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판단되었던 것과 다른 결을 가지며, ‘사후 성폭력’ 개념, 혹은 켈리의 성폭력 연속선 개념을 다시 소환하여, 성폭력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한다.

▪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전 남자친구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 나체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유를 했고요, 메시지를 포함해서, 사진이랑 메시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 같은 걸 함께 유포했고, 저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본 다음에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이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가해자들은 익명의 다수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고,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2015-2016년 카메라이용촬영 상담통계 분석에서도 피해자는 여성이 93.9%, 가해자는 남성이 92.1%²²⁾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성폭력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영상을 자발적으로 촬영했는지, ‘문란한’ 여성이 아닌지,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거나, 그런 상황이 유발될 수 있도록 ‘자처’한 것이라는 통념들 말이다.

22) 조소연, 2017,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 2015~2016년 상담일지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33-34쪽.

4.

/사이버 성폭력의 인식적,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매우 여러 각도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 ‘가상공간’에서의 폭력이 아니라, 성적통합성을 침해하는 젠더기반폭력, 차별이라는 확장된 접근이 필요

- ‘Real’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것이라는 편견을 해체할 필요 있음
- 젠더편향적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필요
- ‘음란물’에 대한 기준, 정의, 용어 교체 필요
- 촬영과 유포 분리, 저장, 제시 규정 신설, 촬영주체가 본인이어도 처벌 필요
- 이미지 조작, 재생산(지인합성 등) 처벌 규정 마련 필요(최란, 2017)
- 주거침입 속옷 촬영, 유포, 일반음식점 화장실 처벌 규정 필요(울림, 2017)
- ‘저작권’있는 영상일 경우 삭제 지원 어려운 문제
- 실효성있는 가해자 처벌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이 80%, 2016, 여성변호사회)
-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 활용 방안 확대
- 비동의 성적영상물 해시값 등 삭제 지원 기관과 국가 기관들의 공유
- 정부의 2017. 9. 26 종합대책 모니터링 현실화
- 젠더폭력근절기본법(가)에서 반영될 필요

그러나 사이버성폭력은 단지 법 개정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법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주체로서 여성 존재를 위한 문화 운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적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교육할 것이 아니라 ‘친밀한/연애관계’에서의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감수성이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여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방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유형을 세분화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에 대한, 어떤 피해이며,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담론화해야 한다.

지금, 미투를 말하는 피해 여성들은 TV와 인터넷 너머에 존재하는 듯하지만, 사실

손당을 곁에 즐비했고, 이제 많은 여성들은 ‘위드유’를 넘어 ‘우리가 피해자’라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지와 도움이 필요했던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피해자이자 거리로 나서서 ‘싸우는 주체’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피해자임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것이고,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으며, 그 왜곡된 시각을 바꿔낼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 [사례 4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피해]

“저는 페미니즘을 뭐 옹고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장 늦게, 가장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활동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못하더라구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수십명이 죽어가는데, 이건 저만의 피해가 아니라 거의 집단적 피해거든요.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집단적 피해예요. 이렇게 강남역 다녀온 사람 말고도 00에게 고소당한 사람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도 정말 스트레스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도 남자한테는 괜찮은데 여자한테는 굉장히 법이 엄격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 때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면 다들 죽어 갈거고 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신종 범죄’도 ‘새로운 범죄’도 아니다. 사회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둔갑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그 예외의 대상을 좁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구조적 문제임을 싸워나갈 때, 그 자리에서 운동은 지속되고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토론 3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례 중심의 현장 분석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2018년 5월 14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별 따라 수사속도 조절,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사성은 현장 단체로서 최근 ‘대학 수업 중 누드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유포 사건’에서의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되는 본 단체 지원 사건에서의 피해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발표하고자 한다.

[사례1]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의 이름, 학교, 신분증, 연락처를 포함한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SNS 등의 플랫폼에 유포되었다. 용의자는 전 남자친구 한 명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며 피해촬영물 추가 유포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요청하였다. 원본 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도록 주거지 압수수색을 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원본 영상을 2차로 유포하였다. 피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소 및 삭제 등의 피해회복과정이 처음부터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피해자는 1차 형사고소에서 수사기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촬영물 원본이 압수되었다면 이와 같은 2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례 2]

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 유포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 글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던 영상이고, 유포된 모욕 및 허위사실에도 전 남자친구만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중 피의자가 사이버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알렸다.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였고, 한국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떤 범죄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가해자는 원래 드물다. 그러나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더 이상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사례3]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다. 조사 중에 가해자가 갖고있던 영상을 삭제하려던 정황이 발각되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이 아니라 '이제라도 지우려는 노력'으로 해석하였다. 증거인멸이라면 영상을 전부 지우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의 영상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던 태도와 판이하게 다른 입장이다. 그동안 사례와 같이 가해자에게 이입하던 수사기관이 흉대 사건에서만큼은 피해자 입장의 관점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히 보호받기를 기대했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나면 매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한다. 어떤 피해자는 흉대 사건을 보며 구속수사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유가 그것뿐인지, 여태까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었던 가해자가 몇이나 됐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 유포 사례 피해자들의 피해게시물 댓글란에는 수십 개의 조롱 댓글과 2차 가해 댓글이 있었고, 그 피해촬영물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시청하는 가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분명 그들도 수사가 필요한 2차 가해자일 텐데, 과거 사건 진행 당시에는 왜 이를 2차 가해로 분류하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 차원에서 채증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 피해자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랐던 대응은 바로 이번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과 같은 조치였다.

경찰은 그동안 여성들의 불법촬영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피해촬영물 유통 플랫폼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할 수 없다고 했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러나 여성이 가해자가 된 순간 가해자는 구속되고 포토라인에 세워졌으며, 피해촬영물이 올라온 해외 서버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추적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일관성있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을 규탄하며, 모든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차별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²³⁾

2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5월 17일 경찰청 기자회견문 및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긴급토론회] :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정치

무엇이 통계가 되는가,
어떻게 처벌하는가,
누구의 시선인가!

- 발 행 일 | 2018. 6. 15.
- 발 행 인 | 이미경
- 발 행 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 사무전화 : 02-338-2890)
- 편 집 | 양가연
- 인 쇄 | 카피플러스(02-322-1049)